
2020 복구 종합감사 결과(기관경고) 공개

2020. 9. 14. ~ 9. 25. 기간에 실시한 울산복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“기관경고”처분된 내용을 「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」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

송정동 행정복지센터

[일련번호 : 11]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【기관명(부서명)】 울산광역시 북구(송정동 행정복지센터)

【제 목】 민방위업무 추진 소홀

【행정상 조치】 시정

【재정상 조치】 없음

【신분상 조치】 기관경고 8개 기관(농소1동 등)

【지 적 내 용】

가.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 자원관리 부적정

- 「민방위기본법」 제23조(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), 제24조(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)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(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(교육훈련 결과보고), 「민방위 교육 지침」 등에 의하면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,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.
- 또한 읍·면·동장은 교육 훈련통지서를 소속 민방위 대장(통장)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을 발송하거나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문서 및 이메일 등으로 전달할 수 있고 등기우편 반송 등 송달증빙 미확보 시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야 하며
-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·훈련에 불참한 자와 명령 불복종자에게는 민방위 기본법령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여야 한다.
- 그런데 북구(송정동)는 장기출타, 민방위 대원의 개인적인 사유, 고의적 수령 거부 등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수령증 전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과태료 부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에도

- 민방위 교육 불참자 105명 중 과태료 미부과 103명에 대하여 증빙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과 공시송달 절차 등을 취하지 않아 교육 위반 과태료를 미부과 하는 등 관련업무를 안일하게 처리하였다.

나. 교육훈련 면제자 처리 부적정

- 「민방위기본법」 제7조(지역민방위협의회)와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31조(교육훈련의 면제) 및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2조(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), 제3조(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)에 따르면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동장의 승인을 받아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- 그런데 복구(송정동)는 최근 3년간 민방위대원 102명에 대한 교육훈련 면제처리 하면서 동장의 승인없이 담당자 임의대로 새올시스템에 입력하여 면제처리 하는 등 민방위 자원을 안일하게 관리하였다.

【조치할 사항】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은

- 「민방위기본법」, 「민방위 업무 지침」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시 수령증 전달이 어려울 경우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
-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자는 동장 승인(결재)을 필히 득하고 전산(새올시스템)에 입력하여 면제자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
- 앞으로는 이와 동일·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